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검 토 보 고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등〉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3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등	4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8. 14.
3. 회부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본법의 전신(前身)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배우자 및 2촌 이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등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1945년 8월 15일 기준)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이 달라지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u>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u>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u>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
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
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
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
명도 승계 대상이 된다.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서 삭
제>

<삭 제>

<삭 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①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 이하 “의제 손자녀”라 함),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경우)로 정하고 있고,¹⁾ ②보상금은 유족 중 선순위 1명에게 지급하되, 그 순위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²⁾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한편,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하였고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존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표 1] 독립유공자법상 수권자(유족) 현황

(단위 : 명, %, '24년 9월 기준)

구 분	본 인	배우자	자녀·자부	손자녀	중손자녀	고손자녀	합 계
인원수	5	181	3,685	4,950	108	12	8,941
비 율	0.1	2	41.2	55.4	1.2	0.1	1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2]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훈격별 현황

(단위 : 명, %, '24년 7월 기준)

합 계	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2,483	191	454	1,031	184	623

자료: 국가보훈부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5. 12. 22.>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이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수급 대상은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1945년 8월 15일 기준)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이 달라지는 것과 손자녀의 경우 보상금 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손자녀(의제 손자녀 포함)의 보상금 수급권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고,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가 사망할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인 증손자녀(의제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승계하게 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유족 범위 변화

구분		현 행	개정안
손자녀 유족	최초 등록 시 자녀 사망	손자녀	손자녀+증손자녀
	최초 등록 시 자녀·손자녀 사망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그의 자녀 (증손자녀+고손자녀 또는 고손자녀+현손자녀)

자료: 국가보훈부

[표 4] 현행법과 개정안의 보상금 수급대상 비교

구분			현 행	개정안
1순위			배우자	현행과 같음
2순위			자녀	현행과 같음
3순위	최초 등록 시 자녀 생존	자녀 보상금 지급 자녀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 (1인*) * 다른 손자녀 이전 금지	손자녀* * 다른 손자녀 이전
	최초 등록 시 자녀 사망		손자녀 (1인*) * 다른 손자녀 이전 금지	손자녀* * 다른 손자녀 이전 모든 손자녀 사망 등→증손자녀 승계
	최초 등록 시 자녀·손자녀 사망		의제 손자녀 1인* (증·고손자녀) * 다른 의제 손자녀 이전 금지	의제 손자녀* * 다른 의제 손자녀 이전 모든 의제 손자녀 사망 등→그 자녀 승계
4순위			자부	현행과 같음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³⁾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권의 회복’이라는 공헌 및 그 희생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신분적 의무 없이 국권수호를 위해 공헌한 자발적 희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⁵⁾

○ 또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이 이루어질 시기는 일제의 국권침탈시기 전·후로서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기였다는 점과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다른 보훈체계와는 차별되는 보훈체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⁶⁾

□ 다만,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보훈보상의 수준, 국가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3) 최초 등록 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손자녀까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고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또는 현손자녀(고손자녀+현손자녀)까지 확대함.

4)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5)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결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참조.

6)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p.46.

있음.

- 첫째, 일반적으로 보훈 관계법률은 보훈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를 부양, 양육의 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등으로 인하여 유·가족을 제대로 부양·양육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국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임.
-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⁷⁾
-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부양·양육의 관련성이 미약한 증·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동등한 보상을 하는 것은 보훈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 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사망 등에 따른 영향이 자녀와 비교하여 덜 직접적이며 물질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호와 예우 필요성이 유공자의 자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견해⁸⁾가 있음.

7)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319 결정(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참조.

8)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8헌마331 결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참조.

- 즉,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보상의 특수성⁹⁾을 고려하더라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증·고손자녀의 독립유공자 본인과 부양·양육 관련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5]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유가족 범위 비교

구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배우자, 자녀, 부모, 성 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조부모, 60세 미만 의 직계존속과 성년 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배우자, 자녀, 부모, 성 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조부모, 60세 미만 의 직계존속과 성년 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유족의 범위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로 두고 있음(다만, 법률에 금전적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에 의한 추가 재정 소요액은 향후 5년간 약 2,982억 8,9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족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분을 더할 경우 연 평균 약 683억 6,600만원(5년간 약 3,418억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9) 독립유공자의 희생이 이루어질 시기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던 시기였던 점 및 대부분의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손자녀까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89 결정 참조).

10) 그 밖에 지원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¹¹⁾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소요예산					5년간 소요 예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보상금	예산	53,932	56,473	59,125	61,909	64,814	296,253
	(인원)	2483	2483	2483	2483	2483	-
의료지원		343	366	404	448	475	2,036
합계		54,275	56,839	59,529	62,357	65,289	298,289
자료: 국가보훈부							
<유족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도별 소요예산					5년간 소요 예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보상금	예산	2,566	5,291	8,140	11,231	14,470	41,698
	(인원)	131	256	376	496	610	-
생활조정수당		6.4	12.7	15.9	22.3	25.4	82.7
의료지원		18.9	37.1	56.7	77.9	100	290.6
교육지원		79	149	208	263	311	1,010
취업지원		0.22	0.44	0.66	0.66	0.88	2.86
대부지원		36	68	95	119	140	458
합계		2,706.52	5,558.24	8,516.26	11,713.86	15,047.28	43,542.16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에 대한 유족 범위 및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의 희생 및 공헌,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의 특수성과 함께 보훈보상의 취지에 따른

11) [참고] 법안 관련 소요 예산 추계(p.15)

전체적인 보상체계, 다른 유공자 후손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추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지원 대상 등이 타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 고

법안 관련 소요 예산 추계¹²⁾

□ 추가재정소요 총계 : 연평균 684억원, 5년간 3,418억원 소요('25~'29년)

① 유족 범위 확대 : 연평균 8,708.4백만원, 5년간 43,542.16백만원

○ 보상금 : 연평균 8,340백만원(5년간 41,698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2025	인원(명)	131	5	18	48	14	46
	단가(천원)		2,887	2,405	1,954	1,394	931
	소요예산(백만원)	2,566	173	519	1,126	234	514
2026	인원(명)	256	10	36	95	28	87
	단가(천원)		3,023	2,518	2,046	1,460	975
	소요예산(백만원)	5,291	363	1,088	2,332	491	1,018
2027	인원(명)	376	15	53	139	41	128
	단가(천원)		3,165	2,636	2,142	1,529	1,021
	소요예산(백만원)	8,140	570	1,676	3,573	752	1,568
2028	인원(명)	496	20	69	183	55	169
	단가(천원)		3,314	2,760	2,243	1,601	1,069
	소요예산(백만원)	11,231	795	2,285	4,926	1,057	2,168
2029	인원(명)	610	24	85	227	67	207
	단가(천원)		3,470	2,890	2,348	1,676	1,119
	소요예산(백만원)	14,470	999	2,948	6,396	1,348	2,780

- (인원) 보상금 지급대상인 손자녀, 증손 등 인원(2,565명*)에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남성 기준)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인원(승계대상) 산출

* 보상금 지급대상 손자녀, 증손 등 연령별 현황

합계(명)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2,565	2	24	243	578	802	762	154

** 훈격별 인원은 전체 보상금 지급자 훈격별 비율 적용

합계	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00%	4%	14%	37%	11%	34%

- (단가) '24년 지급단가에 '19~'24년 연평균 증감률(4.7%) 적용하여 산출

12) 자료: 국가보훈부

o 생활조정수당 : 연평균 16.54백만원(5년간 82.7백만원)

(단위: 명, 천원)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인원	131	256	376	496	610	
㉠수급인원	2	4	5	7	8	
㉢단가	265	265	265	265	265	
소요예산 (㉠×㉢×12월)	6,360	12,720	15,900	22,260	25,440	82,680

* (수급인원) 유족범위 확대인원에 보상금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수급률(1.39%적용)

* (단가) '24년 7월 보상금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평균액(265천원) 적용

o 의료지원 : 연평균 58.12백만원(5년간 290.6백만원)

1) 보훈병원 : 연평균 6.44백만원(5년간 32.2백만원)

- 지원조건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조건과 동일(진료비의 60% 지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대상인원(명)	131	256	376	496	610	
㉢수진횟수(회)	0.4	0.4	0.4	0.4	0.4	
㉤진료단가(원)	35,420	38,087	40,955	44,039	47,355	
진료비(천원) (㉠×㉢×㉤)	1,856	3,900	6,160	8,737	11,555	32,208

㉠ 진료대상인원 : 보상정책과 유족 확대인원 적용(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등록 당시 손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자녀 1인이 권리를 승계)

㉢ 수진횟수 :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수진횟수 활용(0.4)

- 수진횟수 0.4 = 진료연인원 35,856명 ÷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대상자 86,861명

㉤ 진료단가 :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진료단가에 5년 평균증감율 적용(단, 2025년은 2회 적용)

- 2023년 진료단가 30,633원 / 5년 평균증감율 7.53%

2) 위탁병원 : 연평균 51.68백만원(5년간 258.4백만원)

-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설정
(75세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진료비의 60% 지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대상인원(명)	77	150	220	290	357	
㉡수진횟수(회)	8.7	8.7	8.7	8.7	8.7	
㉢진료단가(원)	25,451	25,451	26,418	27,422	28,464	
진료비(천원) (㉠×㉡×㉢)	17,050	33,214	50,564	69,186	88,406	258,420

- ① 진료대상인원 : (* 보상정책과 인원 활용) 보상금 지급대상인 손자녀, 증손 등 인원(2,565명*)에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남성기준)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 인원(승계대상) 산출후, 일반 유족 기준 75세 이상 비율(58.5%) 적용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보상금지급 대상손자녀, 증손 등 사망인원	131	256	376	496	610
75세이상(추정)	77	150	220	290	357

- ② 수진횟수 : 2023년도 60% 감면대상자 수진횟수 활용(8.7회)

- ③ 진료단가 : 2023년도 60% 감면대상자 진료비 지원실적(22,756원)을 활용하되,
2025년부터 2021~2023년 평균 증감율 두 번 적용(3.8%)

o 취업지원 : 연평균 0.57백만원(5년간 2.86백만원)

-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원 추계

[표1]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추정치)
지원인원	191	138	140	115	173
지원단가	0.18	0.20	0.20	0.27	0.24
소요비용	34	28	28	30	42

[표2] 취업능력개발비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대상자 ¹⁾	1	2	3	3	4	13
㉢지원단가 ²⁾	0.22	0.22	0.22	0.22	0.22	0.22
소요비용 (㉠×㉢)	0.22	0.44	0.66	0.66	0.88	2.86

※ 산출식

(1) 연도별 사망인원 × 0.2%(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자녀 및 손자녀 취업지원 대상자(90,083명) 중 최근 5년간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받은 평균 지원인원(151명)의 비율 적용)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사망인원(명)	520	981	1,370	1,711	2,016

* 수급권 승계 인원인 5,048명에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남성기준)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인원(승계대상) 산출

(2) [표1]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현황의 평균 지원단가임

o 대부지원 : 연평균 91.6백만원(5년간 458백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대상자	520	981	1,370	1,711	2,016	
① 융자금	32	60	84	105	124	
② 이차보전금	4	8	11	14	16	
소요비용 (①+②)	36	68	95	119	140	458

* 수급권 승계 인원인 5,048명에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남성기준)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인원(승계대상) 산출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독립유공자 수권자)		520	981	1,370	1,711	2,016
융자금	직접대부지원율	1.10%	1.10%	1.10%	1.10%	1.10%
	직접대부지원단가	5.6	5.6	5.6	5.6	5.6
	소계	32	60	84	105	124
이차 보전금	위탁대부지원율	5.71%	5.71%	5.71%	5.71%	5.71%
	위탁대부지원단가	7.7	7.7	7.7	7.7	7.7
	이차보전율	1.80%	1.80%	1.80%	1.80%	1.80%
	소계	4	8	11	14	16
합계		36	68	95	119	140

* 적용 비율 및 단가 산출 근거

- 직접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직접대부를 받은 건수 비율(5년 평균)
- 직접대부지원단가 : 직접대부금÷직접대부건수(5년 평균)
- 위탁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위탁대부를 받은 건수 비율(5년 평균)
- 위탁대부지원단가 : 위탁대부금÷위탁대부건수(5년 평균)
- 이차보전율 : '24년 국가유공자 예산 이차보전율

o 교육지원 : 연평균 202백만원(5년간 1,010백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 원	40	75	104	130	153	
㉡단 가	1.98	1.99	2.00	2.02	2.03	
소요비용 (㉠×㉡)	79	149	208	263	311	1,010

* 산출식

- 독립유공자 유족 현황(2024.9월 기준) 8,928명
- 독립유공자 유족 중 교육지원 비율 7.6%
(최근 5년 평균 교육지원 인원) ÷ (독립유공자 유족) = 678명 ÷ 8,928명 = 7.6%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에 따른 연도별 승계 유족 인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인 원(명)	520	981	1,370	1,711	2,016

- '25년~'29년 인원(a) = 사망에 따른 승계 유족 인원 × 교육지원 비율
'25년 인원 = 40명(520명 × 7.6%)
- '25년~'29년 단가(b) = 1.98백만원 × 최근 5년 지원단가 증감율(0.6%)
'25년 단가 = (최근 5년 평균 교육지원 예산) ÷ (최근 5년 평균 교육지원 인원)
= 1,340백만원 ÷ 678명 = 1.98백만원
- 소요비용(c) = 인원 × 단가
-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교육지원 인원 및 단가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증감율
인 원	741	749	700	601	597	678	△5.3%
예 산	1,491	1,411	1,331	1,237	1,230	1,340	△4.7%
단 가	2.01	1.88	1.90	2.06	2.06	1.98	0.6%

② 보상금 수급권 확대 : 연평균 59,657.8백만원, 5년간 298,289백만원

<보상금> 연평균 59,250.6백만원, 5년간 296,253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2025	인원(명)	2,483	191	454	1,031	184	623
	단가(천원)		2,887	2,405	1,954	1,394	931
	소요예산(백만원)	53,932	6,617	13,102	24,175	3,078	6,960
2026	인원(명)	2,483	191	454	1,031	184	623
	단가(천원)	-	3,023	2,518	2,046	1,460	975
	소요예산(백만원)	56,473	6,929	13,718	25,313	3,224	7,289
2027	인원(명)	2,483	191	454	1,031	184	623
	단가(천원)	-	3,165	2,636	2,142	1,529	1,021
	소요예산(백만원)	59,125	7,254	14,361	26,501	3,376	7,633
2028	인원(명)	2,483	191	454	1,031	184	623
	단가(천원)	-	3,314	2,760	2,243	1,601	1,069
	소요예산(백만원)	61,909	7,596	15,036	27,750	3,535	7,992
2029	인원(명)	2,483	191	454	1,031	184	623
	단가(천원)	-	3,470	2,890	2,348	1,676	1,119
	소요예산(백만원)	64,814	7,953	15,745	29,049	3,701	8,366

* (인원) 보상금 미수급 손자녀 인원(2,483명, '24.7월 기준)
(단가) '24년 보상금 지급단가에 '19~'24년 연평균 증감률(4.7%) 적용

〈의료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재정 소요 : 연평균 407.2백만원, 5년간 2,036백만원

-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설정
(75세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진료비의 60% 지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대상인원(명)	1,548	1,651	1,760	1,876	1,920	
㉡수진횟수(회)	8.7	8.7	8.7	8.7	8.7	
㉢진료단가(원)	25,451	25,451	26,418	27,422	28,464	
진료비(백만원) (㉠×㉡×㉢)	343	366	404	448	475	2,036

④ 진료대상인원 : 등록관리과('24.7월말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인원 활용

- 선순위유족 : 2025년은 2024년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2,483명)에서 최근 5년간('19~'23년) 유족 증가율(6.6%) 반영후, 일반 유족 기준, 75세 이상 비율(58.5%) 적용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보상금비대상손자녀	2,647	2,822	3,008	3,206	3,418
75세이상(추정)	1,548	1,651	1,760	1,876	1,920

② 수진횟수 : 2023년도 60% 감면대상자 수진횟수 활용(8.7회)

③ 진료단가 : 2023년도 60% 감면대상자 진료비 지원실적(22,756원)을 활용하되,
2025년부터 2021~2023년 평균 증감율 두 번 적용(3.8%)

